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지연

전화 031-481-4337 / 팩스 031-481-4555

보도자료

2021. 6. 3.(목)

제 목

학교동창을 감금하여 수억원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성착취사범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경찰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 - ☑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1조 제2항 제3호)
- ※ 2021. 6. 2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판부(부장검사 민영현)는 학교동창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(성매매대금 3억 원 상당) 한겨울 냉수목욕 및 성착취 사진 촬영 등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착취사범 및 그를 도와 성매매를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약취하고 2억 3천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은닉한 그의 동거남을 각각 구속 기소하였음
- 사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, 검사의 의견제시에 따른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성매매강요 및 가혹행위 등이 드러남
- 검찰은 계좌·문자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의학자 자문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이들 범죄 및 사망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, 특히 범인들 주거지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동거남의 가담사실을 명확히 하여 구속하였으며, 범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2천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하였음
-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였고, 향후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26세, 피해자의 중·고·대학 동창, 무직)
- B○○(27세, A○○의 동거남, 무직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는 '19. 12.~'21. 1. 초순 학교동창인 피해자(26세)를 집에 감금하여 총 2,145회에 걸쳐 성매매 강요(성매매대금 3억 원 상당), 3,868건의 성착취사진 촬영 강요, 냉수목욕·구타·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하여 **【성매매알선법위반(성매매강요), 중감금】**
- A○○와 B○○는 '21. 1. 초순 A○○를 피하여 지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성착취를 위하여 서울로 강제로 데려와 **【성매매약취】**
※ 피해자는 학대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도망 후 입원 중이었음
- A○○는 '21. 1. 초순~1. 19. 위와 같이 데려온 피해자를 다시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, 한겨울 냉수목욕·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**【중감금치사】**
- A○○와 B○○는 '21. 2.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, A○○의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성매매대금 2억 3천만 원을 인출, 주거지에 은닉하여 **【범죄수익은닉법위반】**

II

수사 경과

- '21. 1. 19. 피해자, 사망(광명서 수사 착수)
- '21. 3. 18. 광명서, A○○ 구속 송치
※ 법의학자 자문, 기소전 추정보전 등 보강수사
- '21. 4. 5. 당청, A○○ 구속 기소
- '21. 5. 3. 광명서, B○○ 불구속 송치
※ B○○의 실거주지 및 경찰 단계에서 압수·수색이 누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

- '21. 5. 31. 당청, B○○ 직구속
- '21. 6. 3. 당청, B○○ 구속 기소

III 수사 의의

- 특이사항 미발견 사유로 유족에게 환부 예정이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검사가 사안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하도록 의견제시. 그 결과 성매매강요, 가혹행위 등이 드러남
- 경찰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신속히 압수·수색하여 범죄수익인 성매매대금 2억 3천만 원을 압수하고, 검찰은 A○○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하여 재산을 동결함
- 검찰은 계좌거래·문자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법의학자 자문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성매매강요, 가혹행위 및 사망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,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·수색하여 동거남 B○○의 가담사실을 명확히 하여 직접 구속함
- 검찰과 경찰은 이와 같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히고 범죄수익을 박탈하였음
- 나아가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음

IV 참고 사항

- A○○는 피해자의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이고 피해자와 직장생활도 함께 하였음. A○○는 심약한 피해자가 A○○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
- 성매매로 수익이 발생하자 A○○는 '19. 5.경부터 피해자에게 '가상의 성매매조직이 배후에 있다'고 겁을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

- A○○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‘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하고, 자신이 피해자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’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족과 단절시킴. 피해자는 점차 A○○에게 ‘그루밍’ 되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름

V

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성착취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음
- 또한,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배상명령 및 사망구조금 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☒